

국제수산 월간동향

2021. 6



한국원양산업협회

KOFCC 해외수산협력센터

목 차

1. 제25차 IOTC 연례회의 참석 결과
2. 일본 수산청, 참치 쿼터 관련 자원 설명
3. 식물 유래의 인공 어육, 세계 시장 급성장
4. NGO Oceana, 신규 IUU 선박 추적장치 제한점 주목
5. 러시아 연구 기관, 양식 생물 감지기 연구 파트너 모색
6. EU 옐로우 카드 받은 국가들의 IUU 개선 노력

□ 황다랑어 회복계획 보존조치(결의19/01) 개정 논의

○ (논의 배경) 인도양 황다랑어 자원의 지속적인 악화와 결의19/01에 따른 어획량 감축에 면제되는 국가들로 인하여 자원회복 노력의 효과 감소

○ (논의 내용)

번호	논의 내용								
1	<p>연례회의의 시작 전 EU와 몰디브는 각각 황다랑어 조치 개정안을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양 조업국 어획 감축률 : (EU) 20% vs (몰디브) 35% (2) 공급선 이용 : (EU) 어선 5척당 2척 vs (몰디브) '24년부터 공급선 전면금지 * 두 제안서 모두 R19/01의 면제조항을 없애고 전 수역과 전 어업을 감축 대상으로 포함 - 회원국 주요 의견 <table border="1"> <tr> <td>세이셸</td> <td>'14년도 SIDS의 선단 발전 상태를 고려하여 SIDS의 기준년도를 '17-'19년으로 변경 요청</td> </tr> <tr> <td>한국</td> <td>R19/01 이행상태 고려하여 감축률 차등 설정 주장</td> </tr> <tr> <td>인도, 파키스탄 등</td> <td>자국 EEZ 내 소규모 영세어업은 면제 필요</td> </tr> <tr> <td>오만</td> <td>어떠한 제안서도 수용 불가하며 거부권 행사할 것</td> </tr> </table> 	세이셸	'14년도 SIDS의 선단 발전 상태를 고려하여 SIDS의 기준년도를 '17-'19년으로 변경 요청	한국	R19/01 이행상태 고려하여 감축률 차등 설정 주장	인도, 파키스탄 등	자국 EEZ 내 소규모 영세어업은 면제 필요	오만	어떠한 제안서도 수용 불가하며 거부권 행사할 것
세이셸	'14년도 SIDS의 선단 발전 상태를 고려하여 SIDS의 기준년도를 '17-'19년으로 변경 요청								
한국	R19/01 이행상태 고려하여 감축률 차등 설정 주장								
인도, 파키스탄 등	자국 EEZ 내 소규모 영세어업은 면제 필요								
오만	어떠한 제안서도 수용 불가하며 거부권 행사할 것								
2	EU와 몰디브는 양자 협의를 통해 제안서 통합을 시도하였으나 합의 도출 실패								
3	<p>회의 4일 차에 EU와 몰디브는 각각 개정안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는 개정본에서 한국을 위한 조항*을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척 이하 선망선을 운영하는 CPC는 '14년도 수준에서 선망 어업량 15% 감축 - 두 제안서 모두 세이셸의 요청 반영(기준년도 '14년 → '17-'19년 변경) - 남아공, 중국, 호주 등 국가들은 몰디브 제안서로 논의 주장, 한국은 EU 제안서 지지 								
4	<p>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의장은 어획 감축률만 개정하기를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지막까지 이견*을 보인 EU, 몰디브, 한국이 삼자 회의를 통해 개정 초안 작성 결정 * 한국은 적은 어획량에도 불구하고 R19/01 이행을 위해 선망 노력량 60%를 감축하는 등 회복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였으니 추가 감축은 수용 불가함을 강력히 주장 								
5	<p>마지막 날 총회 시작 전 EU, 몰디브, 한국의 삼자 회의 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몰디브와의 양자 협의를 통해 '14년도 전체 어획량의 13% 감축을 결정* * 이전 조치(R19/01)에서는 어구별 감축률이 별개 설정되어 한국은 선망 어업만 15% 감축 - EU와 몰디브는 EU의 어획 감축률에 합의 도출 실패* * (EU) 20%가 마지노선 (몰디브) 23% 주장 								

6	총회에서 EU와 몰디브는 EU의 감축률을 21%로 합의 후 조치 개정안 채택
7	인도네시아, 인도, 이란, 마다가스카, 오만 등 5개국 거부권 행사

○ (주요 개정내용)

조항	개정 내용
제1항	본 결의는 IOTC 협약수역 내 모든 CPCs에게 적용
제5항	'14년 황다랑어 어획량이 5,000mt 이상인 국가는 '14년 수준에서 21% 감축 - 연안 개도국은 12% 감축 - SIDS는 10% 감축
제6항	'14년 황다랑어 어획량이 5,000mt 이하이고 '17-'19년 어획량이 5,000mt 이상인 국가는 '14년 수 준에서 21% 감축 - 연안 개도국은 '17-'19년 수준에서 12% 감축 - SIDS는 '17-'19년 평균 또는 '18년 수준 중 높은 수치에서 10% 감축
제7항	'14년 황다랑어 어획량이 5,000mt 이하이고 '17-'19년 어획량이 2,000~5,000mt 사이인 국가는 '17-'19년 중 최고치 초과 금지
제8항	'14년 황다랑어 어획량이 5,000mt 이하이고 '17-'19년 어획량이 2,000mt 이하인 국가는 2,000mt 초과 금지
9bis*	5항의 어획감축 적용 시, '17-'19년 평균 어획량이 10,000mt 미만인 원양 조업국은 '14년 수 준에서 13% 감축

* (9bis) 한국에게만 적용

□ FAD 관리조치(결의19/02) 개정 논의

○ (논의 배경) 케냐 등 연안국은 DFAD 수 감축 등을 제안한 FAD 관리조치 개정안을 제출

○ (논의 내용)

번호	논의 내용
1	케냐 등 연안국은 DAFD 수 감축, 금어기, 공급선 금지 등을 제안한 개정안 제출 - 한국, 일본, EU 등 국가는 개정 제안의 과학적 근거 부족을 지적하고, 본 논의는 10월 개최될 FAD 작업반 논의 후 진행해야 함을 주장 - 케냐 등 제안국은 다른 RFMOs에서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예방적 조치로 FAD 금어기 등을 채택하였음을 지적
2	몰디브 등 국가는 FAD 작업반 관련 EU의 제안에 대하여 회의론 제기 - 지난 6년간 FADWG은 한 번 개최되었으며 위원회에 권고 제공도 실패
3	총회 4일 차에 FAD 소작업반 개최 - 몰디브는 사무국에 IOTC가 FAD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지 질의 → 사무국은 데이터가 있지만, 관련 규정(R19/02 24항)에 따라 이행평가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함을 설명
4	마지막 날 케냐 등 제안국들은 개정 제안서를 소개 후 투표로 채택 강행

5	투표 결과 - 회의에 참석한 총 19개국 회원국 중 찬성 12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전체 30개 회원국의 과반수를 넘지 못해 채택 무산
---	---

- **(논의 결과)** 투표 결과 발표 후 호주는 IOTC 투표 규정에 따르면 기권이 불가함을 주장
- 이에 논란이 일자 본 사안은 FAO 법률 자문에게 문의하기로 결정

□ 기타 결의안 개정 논의

결의	내용				
결의16/02 - 가다랑어 어획통제 규칙(HC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 국가) EU, 몰디브 * EU, 몰디브 각자 제안서 제출 - (논의 배경) 가다랑어 어획한도의 지속적인 초과가 발생하자 HCR에 따른 가다랑어 관리목표 준수 필요성 제기 - (논의 내용) · 양국 제안서 주요 제안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EU 제안서</td> <td style="text-align: center;">몰디브 제안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13,572mt 어획한도 설정</td> <td style="text-align: center;">향후 HCR에 따른 어획한도 유지를 보장하는 CMM 채택</td> </tr> </table> <p>→ S25는 황다랑어 논의를 우선하여 가다랑어 제안서에 대한 심층 논의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의 결과) 몰디브 개정안 문구를 shall에서 may로 바꾸어 채택 	EU 제안서	몰디브 제안서	513,572mt 어획한도 설정	향후 HCR에 따른 어획한도 유지를 보장하는 CMM 채택
EU 제안서	몰디브 제안서				
513,572mt 어획한도 설정	향후 HCR에 따른 어획한도 유지를 보장하는 CMM 채택				
결의13/04 - 고래목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 국가) 한국 - (논의 배경) 한국은 선망 어업에만 적용되는 고래목 보호 조치를 예방적 조치로서 연승 어업에도 적용 제안 - (주요 의견) · (일본) 예방적 조치 원칙에 동의하나 본 원칙은 자원상태가 위험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함. 인도양 고래목은 위험하지 않음 · (몰디브) 제안서에 동의하나 예방적 조치 주장에 다중잡대 적용하는 모습에 우려 · (EU, 영국, 호주 등) 본 개정안에 지지하며, 자망 등 기타 어구도 포함 주장 - (논의 결과) 논의 시간 부족으로 회기간 논의 지속 결정 				
결의19/06 - 대형어선 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 국가) 인도네시아 - (논의 배경) 인도네시아 목재 운반선 관련 시범사업 종료와 함께 ROP와 통합을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의 내용) → 이미 이행위에서 국가 읍서버 프로그램의 ROP 통합은 불가 결정 → 이에 인도네시아는 R19/06 부속서5의 인니 목재 운반선 수를 8척에서 12척으로 증가하고 시범사업 기한을 3년(21~23) 연장 제안 - (논의 결과) 인도네시아의 개정안 채택
--	---

□ **협력적 비회원국(CNCP) 자격 신청**

- **(논의 배경)** 이행위원회(CoC18)는 세네갈과 라이베리아의 CNCP 자격 갱신 신청을 승인하기를 위원회에 권고
- **(논의 결과)** 연례회의에 참석한 세네갈의 신청은 승인되었으나,
 - 신임장 문제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라이베리아는 IOTC 규정*에 따라 CNCP 자격 신청 거절
 - * IOTC 규정은 신청국이 연례회의에 참석해야 CNCP 자격이 수여되도록 명시

□ **IUU 선박 목록**

- CoC18에서 채택한 잠정 IUU 목록 개정 없이 채택

□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총회
 - 의장 : 한국 김정례 주무관
 - 부의장 : 몰디브 Adam Ziyad(연임)
 - 제2부의장 : 남아공 Qayiso Mketsu
- 이행위원회
 - 의장 : 프랑스 Anne-France Mattlet(연임)
 - 부의장 : 인도네시아 Indra Jaya(연임)
- 재정위원회
 - 의장 : 몰디브 Hussain Sinan(연임)
 - 부의장 : 파키스탄 Muhammad Fshan Khan(연임)

□ 일본 수산청, 어민들 대상 태평양 참다랑어 자원 상태 설명

- 7월 말에 개최될 예정인 중서부태평양 수산위원회 (WCPFC) 제17회 북소위원회 작업반 회의 개최 전에 일본 수산청, 수산연구·교육기구는 18일, 어민들에게 태평양 참다랑어 자원 상태를 설명했음
 - (수산연구 교육기구) 자원평가는 2년마다 1번 데이터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2020년 3월에 실시한 자원평가 결과가 사용된다는 점을 설명
- 현재 상태의 장래 예측에 대해서는 향후 가입량이 낮을 것으로 가정하여 테스트한 12개의 시나리오는 24년의 잠정 회복 목표 (친어 자원량 약 4만 톤) 도 34년 차기 회복 목표 (동 약 13만 톤)도 달성 확률은 모두 9할 이상으로 거의 대부분이 100% 또는 100%에 가까운 것으로 제시
- 일본 수산청 자원관리부는 '17년에 합의한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 제어 규정이 대해 추가적으로 해설
 - 동 규정은 자원 변동에 대응하여 관리 조치를 자동으로 변경하는 제도로 잠정 회복 목표의 달성 확률이 60%를 밑돌면, 60%로 회복될 수 있도록 관리 조치 강화를 의무화하고 있음
 - 한편, 75%를 웃돌아 잠정 회복 목표 달성 확률 7할을 유지하면서 차기 회복 목표 달성 확률 6할을 유지하면 쿼터 증가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

※ 출처: 미나토 신문¹⁾

1)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12624> ('21년 6월 25일 검색)

- 식물 유래로 만든 인공 어육 세계 시장은 2031년까지 13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
 - 미국 컨설팅 회사 Fact.MR (팩트 엠알)은 식물 유래의 인공 어육 시장이 21-31년의 11년간 평균 연율 28%의 급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
 - 환경에 대한 배려나 수산 지원의 급격한 악화, 건강 지향이 높아지는 등의 경향을 배경으로 향후 급속도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최대한 동물을 섭취하지 않으려는 채식주의의 경향 등도 확대되어 식물 유래의 어육 제품 시장은 '16-20년 5년간 두 자릿수의 성장을 보임
 - 동사에 따르면 현재 시장에서는 햄버거용 패티나 필레가 각각 전체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메인 상품
 - 향후 31년까지 식물 유래의 새우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원료별로는 보리 유래 단백질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 보리는 맛에 거부감을 느낄만한 부분이 없고 무난하다고 평가받고 있어, 제조사의 3분의 1 이상이 향후 보리 단백질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
 - 대두 단백질이 식물 유래 어육 제품의 적어도 3할 이상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 글루텐 불내증 등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소비자가 장에 좋은 대체품을 찾게 되는 경향도 있음
 - 판매 채널별로는 사람들이 바쁠 때 이용하는 기회가 많은 외식이나 푸드 서비스

업계가 주력이며, 향후에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면 온라인 판매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

- 한편 인공어육은 생산과정이 복잡하여 비용 등의 과제도 있음
- 인공 어육을 부드럽게 생산하려면, 고액의 설비투자가 필요, 소규모 생산자로는 한계가 있는 점, 제품이 고액이라 소득이 낮은 소비자 층은 커버가 되지 않는 점, 지역에 따라서는 식물 유래의 인공 어육을 섭취하는 장점에 대한 의식이 낮은 점 등이 향후 과제

※ 출처: 미나토 신문²⁾

2)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12491> ('21년 6월 25일 검색)

- Oceana NGO 단체에서 IUU 조업과 관련된 선박을 추적하기 위해 'IUU 선박 추적장치(IUU Vessel Tracker)'를 새로 출시하였으나, 선박 자체가 많이 보이지 않아 한계에 달하였음
- 추적 장치는 Global Fishing Watch의 추적장치 데이터와 지역 수산 관리 기구의 IUU 선박 목록 그리고 Trygg Mat 추적 데이터를 상호 참조하여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음
 - 추적장치를 통해 세계 누구나 실시간으로 선박의 활동을 추적 할 수 있으나 현재 목록에 기록되어있는 168척의 선박 중 단 2척만 추적이 가능함
 - 선박이 신분을 교체하였거나, 조업을 더이상 수행하지 않거나 자동 식별 시스템(AIS)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추적이 어려워 보임
 - 특히 AIS 신호의 자유자재 온/오프 스위치로 선박 위치 추적 어려움
 - 정부는 기국 선박이 지속적으로 선박의 AIS를 방송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더욱 투명한 선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모든 선박이 조작이 불가능한 AIS를 선상에 보유하며 이를 항차 중 지속적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수산관기기구가 의무화하는 움직임 필요함
 - 정부는 AIS 규정을 위반한 선박에 대해 벌금 부과, 면허 취소, 수입 금지 등 조치 의무화하여 IUU 선박 관리가 더욱 투명하게 관리 될 수 있길 기대

※ 출처: Seafoodsource³⁾

3)<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iuu-vessel-tracker-shows-possible-widspread-abuse-of-ais-switch-off-capability> ('21년 6월 28일 검색)

- 러시아 과학 연구 기관(Institute of Ecology and Evolution of the Russia Academy of Science)에서 “생체전기 장치(bioelectronic installation)”를 사용하여 수질 오염 감시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파트너를 모색 중에 있음
 - 수질 문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꽃게, 가재, 새우 등을 생물 감지기로 활용하는 방법임
 - 생체 전기 장치의 개선을 통해 해양 및 하천 양식을 개선 시킬 수 있길 기대
 - 현재 중국의 기관인 China Agricultural Scientific Innovation Alliance와 협력 사업을 논의 중에 있음
 - 화학적 수질 분석을 통한 수질 오염 개선은 상대적으로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듦
 - 갑각류, 조개류 및 쌍갑류에 센서를 달아서 심장 박동 및 행동을 등록하는 방식을 통해 수질을 감시할 수 있음
 - 갑각류는 수질이 오염되었을 때 극적으로 심장 박동수를 줄이고 껍데기에 숨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질 오염을 감시하는데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음
 - 심장 박동 및 행동 빈도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기록될 수 있으므로 기준 자료가 쉽게 구성될 수 있음
 - 센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양식장, 환경 단체, 감시 당국 등으로 쉽게 전송될 수 있음

※ 출처: Seafoodsource⁴⁾

4) <https://www.seafoodsource.com/news/aquaculture/russian-research-institute-seeks-partners-for-aquaculture-biosensors-tested-in-china> ('21년 6월 28일 검색)

- FAO에 따르면 IUU어업으로 인한 피해는 매년 10조-23조로 추정되고 있음. 참치 부문 관계자들은 주요 수출지인 EU가 불법어업에 관여한 국가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 오고 있어 이 이슈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음. 특히 에콰도르, 베트남, 그리고 가나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EU로부터 경고를 받았음.

■ 에콰도르

- 약 2년 전, 에콰도르는 IUU어업에 관한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EU로부터 옐로우 카드를 받았음. 그때부터, 에콰도르는 옐로우 카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이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옐로우 카드가 철회되기 위해서는 EU가 부과한 67개 개혁 조치를 취해야 함.
- 옐로우 카드를 받게 되는 것 자체로서 EU와의 무역 또는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U의 조치가 바로 취해지는 것은 아님. 하지만, 레드 카드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 가깝게 된 것으로, 레드 카드를 받게 될 경우 EU와의 모든 수산물 무역이 중단됨. 에콰도르에게 EU는 통조림과 횡감용 참치의 주된 수출지이므로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것임. 하지만, 현재는 비즈니스가 계속되고 있고, 현재 수출이 다소 감소하긴 하였으나, 이는 코로나의 영향이고, EU의 옐로우 카드와 관련된 것은 아님.
- 불명예스러운 옐로우 카드를 제거하기 위한 에콰도르의 주된 노력은 IUU어업을 다루고 방지하는 새로운 어업법을 채택하는 것임. 이 법안은 이미 의회를 통과하였고 현재 최종 세부규칙이 마련되고 있음. 소식통에 따르면 에콰도르 정부 교체로 인해 약간의 지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함. 하지만, 수산양식 업계는 이미 새로운 정부 구성원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함.

- 또한, 코로나로 인해 EU의 실사가 지체되고 있음. 에콰도르에서는 일 확진자가 1,000명에 이를 정도로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심각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진행 경과를 평가하기 위한 EU 대표단의 방문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함.
- 지난달, 에콰도르 수산양식부 차관은 EU의 개혁 요구사항의 60%가 조치되었다고 하였고,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였음. 에콰도르 국립 어업회의소 회장은 모든 지체에도 불구하고, EU가 에콰도르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하였음.

■ 베트남

- 베트남은 2017년 10월에 IUU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EU로부터 옐로우 카드를 받았음. 이로 인해, 베트남 수산물의 EU 수출이 2018년에 6.5% 감소(수출액 3억9천만 달러)하였고, 2019년에는 11.5% 감소(수출액 3억4천5백만 달러)하였음. EU-베트남 FTA가 지난해부터 발효하여 베트남은 상황을 개선해야만 함. 지난해 8월 1일부터 베트남 가공업자들은 FTA 원산지규정에 따라 최대 11,500톤의 통조림 참치를 EU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는데 레드 카드를 받게 되면 이것이 불가능하게 됨.
- 베트남 수산물 수출생산업자협회는 베트남 정부와 함께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Ba Ria-Vung Tau 지역에는 현재 어획물의 기원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스템을 갖춘 8개의 지정항구가 있음. 4월에, 협회의 IUU 작업반은 IUU어업, 어획증명, 및 어획기록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여러 이슈들을 논의하기 위해 2개 연안 지역(Ca Mau, Kien Giang)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음.
- 베트남 수산양식부는 최근 연안 지역 수산 당국에게 외국 해역을 침범하는 불법어선들의 취급방법에 대한 지침을 전달하였음. 수산양식부는 VMS를 통해 법위반 징후를 보이는 어선들의 검색, 검증, 통제 등을 위한 내부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음. 작년, 베트남 정부는 자국 어선 18,592척이 감시 장비를 갖추고 있음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총 선단의 약 70%에 해당하는 것임.

- EU는 어업관리 개선 경과에 관해 베트남과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음. 첫 번째 실사는 2018년에 이루어졌는데, 결과는 옐로우 카드의 6개월 연장이었음. 2019년 11월에 EU는 두 번째 실사를 하였는데 상태는 달라지지 않았음. 그 이후, 코로나로 인해 두 번의 화상회의가 2020년 6월과 10월에 각각 개최되었음. 올해 EU가 추가적인 조사를 언제 실시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함.

■ 가나

- EU는 6월 2일에 가나가 기국, 항구국, 연안국 및 시장국으로서 국제법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인해 옐로우 카드를 부여한다고 발표하였음. 가나는 2013년 11월에 첫 번째 옐로우 카드를 받았고 가나의 개선 노력으로 2015년에 해제되었음.
- 작년, 환경정의재단(EJF)은 가나에서 수년간 불법어업이 만연하고 있고 IUU 트롤선박에 의해 어획된 수산물이 EU로 들어오고 있음을 주장하는 조사보고서를 발간했음. 이 어획물은 주로 밴댕이, 고등어, 멸치와 같은 작은 원양어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7년에 약 100,000톤이 가나에 양륙되었음. EJF는 동일한 중국 기업들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점을 들어 트롤에서의 IUU어업을 참치 어업과도 연결시키고 있음.
- EJF는 EU의 결정에 대해 “지금이야말로 가나에서의 불법어업을 영원히 근절시켜야 할 시기이다”고 발표했음. EJF는 또한 가나에서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이 국내법으로 규정한 최소금액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는 가나의 국제법에 따른 책임을 저버리는 것임을 지적하였음.
- 가나는 견고한 참치 어업을 갖고 있고 EU와의 무역은 경제를 위해서 매우

중요함. 2020년에만 EU에 13,494톤의 통조림 참치를 수출하였음. 하지만, EU가 제기한 이슈들에 대해 가나가 조치를 충분한 취하지 않으면, 수산물을 EU에 수출할 수 없게 되는 레드 카드를 받을 수 있음.

- Thai Union의 Pioneer Food Cannery가 프랑스 기업 Petit Navire 및 영국 기업 John West에 가공 참치를 공급하고 있고, 한국 기업 신라교역이 가나 해역 및 인근 공해에서 참치를 어획하고 있음. ICCAT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가나의 참치 양륙량은 가다랑어 60,179톤, 황다랑어 24,864톤, 눈다랑어 2,865톤이었음.

■ 가나의 조치 필요 사항

- 첫 번째 카드가 철회된 후, EU는 계속해서 가나와 IUU 근절 문제를 협의해 왔음. EU는 가나의 국내 조치 중 심각한 결함들을 확인하였고, 다음 사항들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였음:
 - 가나 해역에서 트롤선과 카누 간 작은 원양 어종들의 불법 해상 전재.
 - 선단에 대한 감시, 감독, 통제 시스템의 결함. 이 결함들은 수산물의 합법성 증명을 위해 사용되는 추적 시스템의 신뢰성을 약화시킴.
 - IUU어업활동 관여 또는 지원하는 선박들에 부과되는 제재가 효과성 및 억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여, 심각한 위반행위를 한 자들이 취한 이익이 박탈되고 있지 않음. 벌칙이 또한 불법어획물의 금액에 비례하고 있지 않음.
 - 현재 어업 관련 가나의 법제도는 가나가 서명한 국제조약상의 의무와 부합하지 않음.
 - 가나는 국내적으로 마련된 보존관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음.
- EC 환경해양수산부 장관 Virginijus Sinkevičius는 “가나는 서아프리카 어업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업자원, 연안 공동체, 식량 안보 및 준법조업을 하는 어민들의 이익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위협을 가하는 IUU어업의 근절을 위해 가나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 가나가 참여하고 있는 중서부 기니만 수산위원회는 기니만 해역에서 불법어업 대응 지원을 위한 지역 감시, 감독, 통제 센터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음. 이것이 이 해역에서 IUU어업 근절을 위한 충분한 노력으로 EU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임.

※ 출처: atuna.com ⁵⁾

5) <https://atuna.com/news/ghana-s-cannery-locking-down-the-barrel-with-second-eu-yellow-card?highlight=WjUpY2NhdCslmjY2F0U3MlXQ=>
(2021년 6월 4일 기사)
<https://atuna.com/news/what-are-ecuador-vietnam-doing-to-avoid-eu-s-infamous-red-card?highlight=WjJhaGFuYSlsmdoYW5hU3MlXQ=>
(2021년 6월 21일 기사)